

제 12 부

결 정

사 건 2000아1006 집행정지

신 청 인

피 신 청 인 보건복지부장관

주 문

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

신 청 취 지

주위적으로, 피신청인이 2000. 9. 1.자로 한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
고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| 판결 선고시까지
별지 기재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조항(이하 '이 사건 개정조항'이라
한다)의 효력을 정지한다.

예비적으로, 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개정조항의 집행을 정
지한다.

이 유

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00. 10. 5.

재판장 판사 김영태

 판사 김성수

 판사 김민기